

제354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9월14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14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145.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 146.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백재현·원혜영·박남춘·김경협·김성찬·김민기·설훈·노웅래·안규백·윤관석·신경민 의원 발의) ..... 12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문표·김태흠·경대수·황영철·권성동·이장우·이우현·홍문중·홍철호 의원 발의) ..... 12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유성엽·김경진·정동영·이상돈·최경환(국)·이찬열·오세세·박준영·장병완·장정숙·박주선·채이배·김삼화·박주현·이용호·주승용·김병관·김광수·이종걸·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 12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광온·박경미·설훈·이학영·김철민·윤후덕·이철희·서영교·이해찬·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9) ..... 12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최도자·홍의락·한정애·전재수·이찬열·신창현·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신동근·박재호 의원 발의) ..... 12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희·정인화·최경환(국)·최도자·손금주·김광수·이용주·조배숙·김경진·김동철·박주현·유성엽·주승용·김관영·이용호·신용현·박준영·장정숙·이동섭·송기석·장병완·오세정·김삼화·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 12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문미옥·김병관·김영주·원혜영·최인호·백재현·안규백·권철승·신경민·박남춘·전해철 의원 발의) ..... 12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고용진·황희·이찬열·김중회·임종성·윤후덕·전해철·김해영·유은혜·전재수·박경미·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 ..... 1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채이배·윤종오·최경환(국)·정인화·문미옥·박광온·황희·김종대·남인순·박경미·유승희·윤후덕·유은혜·김종훈·임종성·백재현·신창현·강창일·김정우·박남춘·위성곤·김광수·김해영·이훈·김영춘·강병원·유성엽·정동영·인재근·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6) ..... 1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윤관석·박경미·전재수·원혜영·임종성·인재근·김영진·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8) ..... 13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종훈·추혜선·유은혜·김해영·권미혁·윤종오·박경미·송옥주·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 ..... 13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유은혜·김병관·채이배·어기구·김해영·제윤경·이재정·손혜원·송옥주·이언주·오제세·이철희·서영교·전혜숙·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 ..... 13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박덕흠·윤소하·김성태·김세연·김삼화·김상훈·이명수·이만희·김도읍 의원 발의) ..... 13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학영·전현희·남인순·윤호중·이춘석·김영진·김해영·양승조·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 ..... 13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신창현·제윤경·김해영·박주민·박남춘·유은혜·소병훈·김종훈·송옥주·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 ..... 13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원욱·손금주·이동섭·조배숙·전현희·기동민·설훈·이개호·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 ..... 13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어기구·김해영·안규백·박정·김성수·전혜숙·김정우·변재일·서영교·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3) ..... 13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권미혁·정춘숙·서영교·김삼화·인재근·진선미·설훈·박주민·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2) ..... 13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권미혁·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동영·양승조·황주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3) ..... 13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황주홍·김경진·박홍근·손혜원·박남춘·신창현·남인순·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 ..... 13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남인순·박주민·서형수·손혜원·송기현·신창현·오제세·윤관석·이찬열·전재수·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653) ..... 13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두관·김종민·김현미·박광온·박정·박준영·이언주·정동영·천정배 의원 발의) ..... 13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 13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소병훈·김영호·김영진·김정우·표창원·진선미·박남춘·최경환(국)·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9) ..... 13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박경미·안규백·박홍근·윤소하·추혜선·정성호·김경진·어기구·김종희·이찬열·김종훈·위성곤·표창원·신창현·김정우·황주홍·정동영·전해철·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4) ..... 13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박경미·안규백·박홍근·윤소하·추혜선·정성호·김경진·채이배·어기구·김종희·이찬열·김종훈·위성곤·표창원·신창현·김정우·황주홍·정동영·전해철·서영교·박남춘·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9) ..... 13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서영교 · 윤관석 · 이재정 · 홍영표 · 손혜원 · 강병원 · 전해철 · 이찬열 · 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8) ..... 13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추혜선 · 이정미 · 정성호 · 조배숙 · 김종훈 · 김종희 · 신창현 · 김정우 · 백혜련 · 전해숙 · 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7) ..... 13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 · 김성태 · 이현재 · 김종석 · 김성원 · 한선교 · 김선동 · 정우택 · 조훈현 · 권석창 · 심재철 의원 발의) ..... 14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이찬열 · 김경수 · 홍익표 · 박재호 · 박찬대 · 김정우 · 윤후덕 · 이훈 · 박정 · 송옥주 · 송기현 · 채이배 · 어기구 · 신창현 · 김병관 · 박남춘 · 소병훈 · 이정미 의원 발의) ..... 14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이찬열 · 김정우 · 조승래 · 설훈 · 이해찬 · 손혜원 · 황주홍 · 지상욱 · 송옥주 · 전현희 의원 발의) ..... 14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 · 김정진 · 권은희 · 오세정 · 장정숙 · 박주현 · 채이배 · 김종희 · 주승용 · 김광수 · 남인순 · 정인화 의원 발의) ..... 14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권미혁 · 김종훈 · 서영교 · 김영춘 의원 발의) ..... 14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유승희 · 배덕광 · 윤소하 · 경대수 · 황주홍 · 김재경 · 이혜훈 · 박용진 · 원혜영 · 박덕흠 · 이태규 · 강병원 · 이철희 · 박범계 · 박재호 · 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6) ..... 14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유승희 · 배덕광 · 윤소하 · 경대수 · 황주홍 · 김재경 · 이혜훈 · 박용진 · 원혜영 · 박덕흠 · 이태규 · 강병원 · 이철희 · 박범계 · 박재호 · 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37) ..... 14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윤호중 · 이동섭 · 김민기 · 이찬열 · 신경민 · 윤종오 · 우원식 · 권철승 · 박광운 · 전재수 · 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30) ..... 14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 · 강창일 · 김영춘 · 김정우 · 김종훈 · 김현권 · 민홍철 · 박남춘 · 박재호 · 박주민 · 서영교 · 서형수 · 소병훈 · 송옥주 · 윤소하 · 이원욱 · 이정미 · 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146) ..... 14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 · 김성원 · 김순례 · 민경욱 · 박덕흠 · 박순자 · 송희경 · 원유철 · 이우현 · 이현재 · 정갑윤 · 조원진 · 지상욱 의원 발의) ..... 14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 · 황주홍 · 장정숙 · 신용현 · 김병기 · 이동섭 · 정인화 · 이태규 · 김삼화 · 최도자 의원 발의) ..... 14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 추혜선 · 김종대 · 이정미 · 윤소하 · 김종훈 · 심상정 · 이종걸 · 윤종오 · 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9) ..... 14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 · 이태규 · 조배숙 · 안철수 · 김정진 · 김동철 · 박선숙 · 이용주 · 박준영 · 최경환(국) · 김종훈 · 추혜선 · 윤소하 · 양승조 · 서영교 · 김삼화 · 오세정 · 신용현 · 권은희 · 주승용 · 이동섭 · 박주선 · 장병완 · 김성식 · 김수민 · 손금주 · 송기석 · 김중로 · 윤영일 · 김관영 · 최도자 · 김종희 · 장정숙 · 정동영 · 박지원 · 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5006) ..... 14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정재호 · 소병훈 · 진선미 · 손혜원 · 표창원 · 김정우 · 박찬대 · 김영진 · 김영호 · 이재정 · 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1) ..... 14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광운 · 이개호 · 전재수 · 이학영 · 박홍근 · 설훈 · 안민석 · 박경미 · 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7) ..... 14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 · 박찬대 · 이철희 · 문미옥 · 강창일 · 위성곤 · 안민석 · 김병기 · 송옥주 · 최인호 · 박광운 · 최운열 · 유동수 · 권미혁 · 박남춘 · 김영호 · 조승래 · 이춘석 · 김상희 · 유은혜 · 신창현 · 표창원 · 전현희 · 이재정 · 설훈 · 윤후덕 · 안호영 · 김

- 현권 · 김철민 · 제윤경 · 고용진 · 김병욱 · 강병원 · 박경미 · 김종민 · 우원식 · 전해철 · 정재호 · 소병훈 · 백혜련 · 김영진 · 김병관 · 박완주 · 임종성 · 기동민 · 홍영표 · 김현미 의원 발의) ..... 14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 · 권성동 · 정양석 · 정운천 · 오신환 · 이균현 · 이학재 · 김성태 · 하태경 · 김현아 · 홍철호 · 김세연 · 박인숙 · 이진복 · 강길부 · 홍일표 · 여상규 · 김재경 · 이종구 · 김학용 · 정병국 · 장제원 · 박성중 · 김무성 · 김영우 · 홍문표 · 주호영 · 김용태 · 유승민 · 유의동 · 이혜훈 · 이은재 의원 발의) ..... 15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김삼화 · 전해숙 · 박주민 · 진선미 · 정춘숙 · 서영교 · 신용현 · 한정애 · 이정미 · 권미혁 의원 발의) ..... 15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곽상도 · 권석창 · 김도읍 · 김명연 · 김정재 · 김현아 · 윤상현 · 이양수 · 조훈현 의원 발의) ..... 15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오신환 · 장제원 · 박인숙 · 정운천 · 김성태 · 이진복 · 하태경 · 강길부 · 주호영 · 정성호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595) ..... 15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원혜영 · 유승희 · 이용득 · 김두관 · 박주민 · 제윤경 · 강병원 · 유동수 · 설훈 · 김철민 · 최운열 · 김병기 · 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2) ..... 15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권미혁 · 설훈 · 김영호 · 김상희 · 김두관 · 제윤경 · 이용득 · 강병원 · 김병기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4) ..... 15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김경진 · 김종훈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안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1) ..... 15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김중로 · 전해숙 · 김정우 · 이동섭 · 김경진 · 홍영표 · 조배숙 · 이용호 · 천정배 의원 발의) ..... 15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서영교 · 백재현 · 김경진 · 박용진 · 김종민 · 박홍근 · 박정 · 김철민 · 박남춘 · 금태섭 · 유동수 · 김수민 · 표창원 · 손혜원 · 김성수 · 유승희 · 김영춘 · 조정식 · 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2) ..... 15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완수 · 김기선 · 곽대훈 · 정유섭 · 김성원 · 전희경 · 염동열 · 권석창 · 이명수 의원 발의) ..... 15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김영진 · 진선미 · 김정우 · 소병훈 · 박남춘 · 백재현 · 표창원 · 김영호 · 금태섭 · 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0) ..... 15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 · 김성수 · 이용득 · 서영교 · 김종훈 · 유은혜 · 박홍근 · 고용진 · 김수민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 ..... 15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홍문표 · 주호영 · 김무성 · 이종구 · 유승민 · 하태경 · 정운천 · 정병국 · 홍철호 · 황영철 · 정양석 · 여상규 · 김성태 · 김재경 · 이학재 · 오신환 · 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9) ..... 15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 · 박지원 · 주승용 · 김경진 · 이태규 · 김중희 · 김삼화 · 오세정 · 천정배 · 김관영 · 박선숙 · 최도자 · 윤영일 · 박준영 의원 발의) ..... 15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표창원 · 노웅래 · 김영호 · 박정 · 김상희 · 원혜영 · 위성곤 · 이철희 · 이원욱 · 심기준 · 박주민 의원 발의) ..... 15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이철희 · 조승래 · 김영호 · 권미혁 · 전해숙 · 유동수 · 강창일 · 우원식 · 전재수 · 어기구 · 강훈식 · 문미옥 · 강병원 · 제윤경 · 박경미 · 이용득 · 백재현 · 박찬대 · 설훈 · 유은혜 · 안호영 · 김철민 · 송영길 · 김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9) ..... 15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 · 전재수 · 박남춘 · 신창현 · 송옥주 · 노웅래 · 박홍근 · 안민석 · 소병훈 · 조승래 · 설훈 · 이용득 · 이해찬 의원 발의) ..... 15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인재근 · 김병욱 · 김영호 · 권미혁 ·

- 전혜숙·박영선·윤관석·김태년·고용진·김상희·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0) ..... 16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노웅래·조승래·인재근·정성호·위성곤·윤관석·윤종오·박홍근·송기현·신창현·박정 의원 발의) ..... 16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동영·장정숙·김경진·정인화·황주홍·노웅래·김관영·이용호·윤영일 의원 발의) ..... 16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철민·김한정·문미옥·박정·백혜련·설훈·소병훈·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이원욱·전현희·조승래·최운열·최인호·표창원·송기현·진영·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5) ..... 16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노웅래·김경협·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철민·김한정·문미옥·박정·백혜련·설훈·소병훈·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이원욱·전현희·조승래·송기현·진영·최운열·최인호·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8) ..... 16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조배숙·오세정·김삼화·권은희·주승용·최명길·최도자·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2) ..... 16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종훈·정동영·문진국·김종대·이정미·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용호·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3) ..... 16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관석·안민석·유은혜·전혜숙·김민기·이찬열·윤호중·정춘숙·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5) ..... 16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서영교·채이배·김세연·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1) ..... 16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박경미·김경협·이춘석·표창원·박용진·신창현·최명길·강훈식·노웅래·금태섭 의원 발의) ..... 16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정우·김병욱·채이배·박범계·장정숙·안호영·박용진·박남춘·소병훈·민병두·송옥주·노웅래·권미혁·박정 의원 발의) ..... 16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조승래·김정우·김종민·박정·소병훈·박남춘·이철희·유동수·윤관석·송옥주·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478) ..... 16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재원·엄용수·김영춘·김성찬·윤후덕·장정숙·박정·홍철호·이양수·이동섭·박준영·윤소하·황영철·김철민·김용태·오제세·윤영일·신상진·백재현·조배숙·이원욱·유성엽 의원 발의) ..... 16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박범계·전혜숙·홍익표·백혜련·서영교·이종걸·인재근·이원욱·박찬대 의원 발의) ..... 16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김병관·이동섭·고용진·김경진·이용호·노웅래·김영주·최운열·장병완·김관영·김성수 의원 발의) ..... 16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5) ..... 16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홍철호·유의동·정운천·이종구·지상욱·정양석·유승민·박명재·김세연 의원 발의) ..... 16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양수·박덕흠·전희경·이현승·여상규·홍철호·경대수·유승희·강병원·박용진·원혜영·이철희·박재호·이태규·정인화·송옥주·윤소하 의원 발의) ..... 16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유은혜·기동민·김상희·이인영·박홍근·김영진·오영훈·설훈·정재호·소병훈·강창일·박정 의원 발의) ..... 17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유승희 · 민병두 · 송기현 · 어기구 · 신창현 · 노응래 · 정재호 · 박남춘 · 전현희 · 고용진 · 김영호 · 김경협 · 박찬대 · 강창일 · 송옥주 · 김상희 · 백혜련 · 위성곤 · 이재정 · 소병훈 · 김철민 · 김병욱 · 조승래 · 김민기 · 박완주 · 오제세 · 안민석 · 이수혁 · 박광온 · 심기준 · 유동수 · 전해철 의원 발의) ..... 17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이철희 · 윤소하 · 박주민 · 원혜영 · 송옥주 · 신창현 · 김철민 · 소병훈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8) ..... 17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 · 신창현 · 정성호 · 고용진 · 김정우 · 유동수 · 심기준 · 최명길 · 민병두 · 김관영 의원 발의) ..... 17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김해영 · 손혜원 · 박경미 · 박정 · 조승래 · 김병욱 · 박남춘 · 안규백 · 박주민 의원 발의) ..... 17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 · 이은권 · 윤영석 · 추경호 · 박완수 · 김진태 · 윤한홍 · 김석기 · 주광덕 · 정갑윤 의원 발의) ..... 17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이종배 · 이철규 · 염동열 · 김석기 · 이은재 · 권석창 · 이양수 · 이현승 · 강석진 · 김도읍 · 민경욱 의원 발의) ..... 17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 · 유동수 · 곽대훈 · 최연혜 · 이채익 · 김병관 · 김성원 · 정태욱 · 권석창 · 함진규 · 김종석 의원 발의) ..... 17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해영 · 변재일 · 설훈 · 위성곤 · 윤소하 · 정춘숙 · 조승래 · 최명길 · 홍익표 의원 발의) ..... 17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김도읍 · 곽대훈 · 이채익 · 염동열 · 김정재 · 박명재 · 정갑윤 · 박덕흠 · 성일중 의원 발의) ..... 17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 · 채이배 · 박주민 · 김경진 · 노회찬 · 김종대 · 김종민 · 이정미 · 윤소하 · 김영호 · 권미혁 · 표창원 · 한정애 · 심상정 · 이철희 의원 발의) ..... 17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정재호 · 박주민 · 전해철 · 신창현 · 안민석 · 어기구 · 김두관 · 제윤경 ·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현 · 유승희 · 이용득 · 박정 · 강병원 · 김영호 · 최윤열 · 김경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수혁 · 김병관 · 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3) ..... 17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 · 윤후덕 · 윤한홍 · 김명연 · 박명재 · 이양수 · 박덕흠 · 유민봉 · 조훈현 · 윤영일 의원 발의) ..... 17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고용진 · 김민기 · 조승래 · 서형수 · 박재호 · 전재수 · 윤호중 · 박광온 · 박홍근 · 윤소하 · 이찬열 · 최인호 · 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5) ..... 17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 추혜선 · 김종대 · 심기준 · 이정미 · 김종민 · 심상정 · 윤소하 · 박주민 · 김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13) ..... 17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김병욱 · 신경민 · 권미혁 · 소병훈 · 박정 · 윤소하 · 정재호 · 김현권 · 양승조 의원 발의) ..... 17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정갑윤 · 황주홍 · 장정숙 · 이찬열 · 최경환(국) · 김경진 · 김광수 · 김중희 · 이동섭 · 장병완 의원 발의) ..... 17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강길부 · 김무성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태 · 박인숙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종구 · 이학재 · 이혜훈 · 정양석 · 정운천 · 주호영 · 지상욱 · 하태경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 ..... 17
9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김경진 · 김광수 · 김병관 · 김삼화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오제세 · 유성엽 · 이동섭 · 이상돈 · 이용호 · 이종걸 · 이찬열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주승용 · 채이배 · 최경환(국) · 황주홍 의원 발의) ..... 18

- 9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권미혁·심상정·추혜선·노희찬·이정미·김종대·정동영·손혜원·양승조·황주홍·박남춘 의원 발의) ..... 18
-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주선·박광온·박경미·설훈·이학영·윤후덕·서영교·박남춘·김철민·이해찬·이철희 의원 발의) ..... 18
-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현승·박맹우·박덕흠·김성태·홍문표·김광림·이우현·김기선·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 ..... 18
- 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김명연·정태욱·배덕광·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 ..... 18
- 1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병관·어기구·김해영·제윤경·이재정·송옥주·이언주·오제세·이해찬·이철희·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2) ..... 18
- 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윤후덕·이원욱·황희·정재호·박광온·김병관·추미애·권철승·김철민·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 ..... 18
-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훈·송기석·윤후덕·이개호·송옥주·이춘석·김철민·백재현·윤관석 의원 발의) ..... 18
- 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박광온·정재호·문미옥·이춘석·김정우·박경미·김성수·박정 의원 발의) ..... 18
- 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박홍근·민병두·위성곤·황주홍·김정우·강창일·최명길·박재호·유동수·전해철·김상희·유은혜·고용진·이학영 의원 발의) ..... 18
-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정성호·박정·신창현·황주홍·황희·서영교·박남춘·박주민·소병훈·전해철 의원 발의) ..... 18
- 1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상희·전혜숙·박주민·진선미·정춘숙·장정숙·서영교·신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 ..... 18
- 1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노희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김수민 의원 발의) ..... 18
- 1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권철승·김병관·이원욱·황희·박홍근·박재호·박광온·김해영·정재호·설훈 의원 발의) ..... 18
- 1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홍문표·이동섭·김관영·조배숙·박준영·김종회·황주홍·유성엽·김중로·김영춘·김철민 의원 발의) ..... 18
- 1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전재수·박홍근·인재근·강창일·서영교·소병훈·김정우·박찬대·강병원·윤관석·박주민·윤소하·유승희·이재정 의원 발의) ..... 18
- 1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김무성·이종구·황영철·주호영·이은재·하태경·지상욱·정양석·김영우·박인숙·김학용 의원 발의) ..... 18
- 1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유승희·박정·인재근·김철민·김상희·이재정·김정우·표창원·진선미·김영진·박남춘·김영호 의원 발의) ..... 18
- 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김상희·민병두·이재정·이철희·원혜영·조승래·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1) ..... 18
- 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이원욱·김상희·민병두·이재정·이철희·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5) ..... 18
-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염동열·이종배·이명수·권성동·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 ..... 19
- 1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강병원·김병기·김영주·김철민·박주민·박광온·박정·이원욱·유승희·최인호 의원 발의) ..... 19
-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6) ..... 19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정재호 · 박주민 · 전해철 · 신창현 · 안민석 · 어기구 · 김두관 · 제윤경 ·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현 · 유승희 · 이용득 · 박정 · 강병원 · 김영호 · 최운열 · 김경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수혁 · 김병관 · 강훈식 의원 발의) ..... 19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정재 · 김태흠 · 성일종 · 김명연 · 윤영석 · 이채익 · 곽대훈 · 김기선 · 이현승 · 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 19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광온 · 박경미 · 설훈 · 이학영 · 윤후덕 · 서영교 · 박남춘 · 김철민 · 이해찬 · 이철희 의원 발의) ..... 19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홍익표 · 황희 · 박재호 · 윤관석 · 문미옥 · 김해영 · 김태년 · 제윤경 · 추미애 · 이원욱 · 김영진 의원 발의) ..... 19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윤후덕 · 이원욱 · 황희 · 정재호 · 박광온 · 김병관 · 추미애 · 권칠승 · 김철민 · 서영교 · 박남춘 의원 발의) ..... 19
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해영 · 박광온 · 정재호 · 문미옥 · 이춘석 · 김정우 · 김성수 · 박정 · 권미혁 의원 발의) ..... 19
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김용태 · 김승희 · 임이자 · 김종석 · 김성태 · 이은권 · 유재중 · 김규환 · 유민봉 의원 발의) ..... 19
1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민병두 · 최명길 · 위성곤 · 김정우 · 전해철 · 유동수 · 고용진 · 김상희 · 유은혜 · 강창일 · 황주홍 · 박재호 · 박홍근 · 이학영 의원 발의) ..... 19
1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김삼화 · 전해숙 · 박주민 · 진선미 · 정춘숙 · 장정숙 · 서영교 · 신용현 · 한정애 · 이정미 · 권미혁 · 이재정 의원 발의) ..... 19
1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김경진 · 김종훈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안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 ..... 19
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선동 · 이현재 · 하태경 · 김성원 · 김성찬 · 함진규 · 이종배 · 조경태 · 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 ..... 19
1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조승래 · 백혜련 · 김병욱 · 소병훈 · 신창현 · 박영선 · 어기구 · 강병원 · 최운열 · 안호영 의원 발의) ..... 19
1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임종성 · 김철민 · 유승희 · 김상희 · 민병두 · 이재정 · 이철희 · 원혜영 · 조승래 · 위성곤 의원 발의) ..... 19
1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심상정 · 이원욱 · 김세연 · 김현아 · 윤종오 · 조배숙 의원 발의) ..... 19
1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선동 · 함진규 · 이종배 · 김성찬 · 정갑윤 · 하태경 · 박명재 · 김석기 · 경대수 · 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 ..... 19
1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 · 이해찬 · 노웅래 · 박찬대 · 신창현 · 송옥주 · 제윤경 · 권미혁 · 유동수 · 김종민 의원 발의) ..... 19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유동수 · 어기구 · 신창현 · 제윤경 · 유은혜 · 고용진 · 이용득 · 김철민 · 권미혁 · 민홍철 · 박정 · 기동민 의원 발의) ..... 19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권미혁 · 이용득 · 신창현 · 김상희 · 박남춘 · 유승희 · 윤후덕 · 진선미 · 이재정 의원 발의) ..... 20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정재호 · 박주민 · 전해철 · 신창현 · 안민석 · 어기구 · 김두관 · 제윤경 ·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현 · 유승희 · 이용득 · 박정 · 강병원 · 김영호 · 최운열 · 김경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수혁 · 김병관 · 강훈식 의원 발의) ..... 20
1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김규환 · 권석창 · 안

상수 · 김용태 · 김무성 · 김종석 · 전희경 · 경대수 · 유의동 의원 발의) ..... 20

1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김병관 · 채이배 · 어기구 · 김해영 · 제윤경 · 이재정 · 송옥주 · 이언주 · 오제세 · 이해찬 · 이철희 · 전혜숙 · 양승조 의원 발의) ..... 20

1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강석호 · 이명수 · 정운천 · 홍문표 · 김성태 · 김현아 · 장제원 · 박성중 · 김학용 의원 발의) ..... 20

14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 ..... 20

14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20

145.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20

146.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20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원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과 청원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97건, 국민투표법 개정안 2건, 정당법 개정안 23건, 정치자금법 개정안 17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3건과 청원 4건을 포함하여 총 146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법률안과 청원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 전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백재현 · 원혜영 · 박남춘 · 김경협 · 김성찬 · 김민기 · 설훈 · 노웅래 · 안규백 · 윤관석 · 신경민 의원 발의)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홍문표 · 김태흠 · 경대수 · 황영철 · 권성동 · 이장우 · 이우현 · 홍문중 · 홍철호 의원 발의)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이동섭 · 유성엽 · 김경진 · 정동영 · 이상돈 · 최경환(국) · 이찬열 · 오제세 · 박준영 · 장병완 · 장정숙 · 박주선 · 채이배 · 김삼화 · 박주현 · 이용호 ·

주승용 · 김병관 · 김광수 · 이종걸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광온 · 박경미 · 설훈 · 이학영 · 김철민 · 윤후덕 · 이철희 · 서영교 · 이해찬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9)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최도자 · 홍의락 · 한정애 · 전재수 · 이찬열 · 신창현 · 김정우 · 김병욱 · 윤후덕 · 서형수 · 박남춘 · 신동근 · 박재호 의원 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 · 김종회 · 정인화 · 최경환(국) · 최도자 · 손금주 · 김광수 · 이용주 · 조배숙 · 김경진 · 김동철 · 박주현 · 유성엽 · 주승용 · 김관영 · 이용호 · 신용현 · 박준영 · 장정숙 · 이동섭 · 송기석 · 장병완 · 오세정 · 김삼화 · 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 · 문미옥 · 김병관 · 김영주 · 원혜영 · 최인호 · 백재현 · 안규백 · 권칠승 · 신경민 · 박남춘 · 전해철 의원 발의)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고용진 · 황희 · 이찬열 · 김종회 · 임종성 · 윤후덕 · 전해철 · 김해영 · 유은혜 · 전재수 · 박경미 · 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채이배 · 윤종오 · 최경환(국) · 정인화 · 문미옥 · 박광온 · 황희 · 김중대 · 남인순 · 박경미 · 유승희 · 윤후덕 · 유은혜 · 김중훈 · 임종성 · 백재현 · 신

- 창현·강창일·김정우·박남춘·위성곤·김광수·김해영·이훈·김영춘·강병원·유성엽·정동영·인재근·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6)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윤관석·박경미·전재수·원혜영·임종성·인재근·김영진·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8)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종훈·추혜선·유은혜·김해영·권미혁·윤종오·박경미·송옥주·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유은혜·김병관·채이배·어기구·김해영·제윤경·이재정·손혜원·송옥주·이연주·오제세·이철희·서영교·전혜숙·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박덕흠·윤소하·김성태·김세연·김삼화·김상훈·이명수·이만희·김도읍 의원 발의)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학영·전현희·남인순·윤호중·이춘석·김영진·김해영·양승조·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신창현·제윤경·김해영·박주민·박남춘·유은혜·소병훈·김종훈·송옥주·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9)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원욱·손금주·이동섭·조배숙·전현희·기동민·설훈·이개호·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어기구·김해영·안규백·박정·김성수·전혜숙·김정우·변재일·서영교·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3)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권미혁·정춘숙·서영교·김삼화·인재근·진선미·설훈·박주민·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2)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권미혁·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동영·양승조·황주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3)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황주홍·김경진·박홍근·손혜원·박남춘·신창현·남인순·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남인순·박주민·서형수·손혜원·송기현·신창현·오제세·윤관석·이찬열·전재수·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653)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두관·김종민·김현미·박광온·박정·박준영·이연주·정동영·천정배 의원 발의)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소병훈·김영호·김영진·김정우·표창원·진선미·박남춘·최경환(국)·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9)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박경미·안규백·박홍근·윤소하·추혜선·정성호·김경진·어기구·김종회·이찬열·김종훈·위성곤·표창원·신창현·김정우·황주홍·정동영·전해철·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214)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박경미·안규백·박홍근·윤소하·추혜선·정성호·김경진·채이배·어기구·김종회·이찬열·김종훈·위성곤·표창원·신창현·김정우·황주홍·정동영·전해철·서영교·박남춘·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9)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서영교·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 대표발의)(진선미·추혜선·이정미·정성호·조배숙·김종훈·김종회·신창현·김정우·백혜련·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7)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김성태·이현재·김종석·김성원·한선교·김선동·정우택·조훈현·권석창·심재철 의원 발의)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찬열·김경수·홍익표·박재호·박찬대·김정우·윤후덕·이훈·박정·송옥주·송기현·채이배·어기구·신창현·김병관·박남춘·소병훈·이정미 의원 발의)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찬열·김정우·조승래·설훈·이해찬·손혜원·황주홍·지상욱·송옥주·전현희 의원 발의)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김경진·권은희·오세정·장정숙·박주현·채이배·김종회·주승용·김광수·남인순·정인화 의원 발의)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권미혁·김종훈·서영교·김영춘 의원 발의)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희·배덕광·윤소하·경대수·황주홍·김재경·이혜훈·박용진·원혜영·박덕흠·이태규·강병원·이철희·박범계·박재호·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6)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희·배덕광·윤소하·경대수·황주홍·김재경·이혜훈·박용진·원혜영·박덕흠·이태규·강병원·이철희·박범계·박재호·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37)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김민기·이찬열·신경민·윤종오·우원식·권철승·박광온·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30)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창일·김영춘·김정우·김종훈·김현권·민홍철·박남춘·박재호·박주민·서영교·서형수·소병훈·송옥주·윤소하·이원욱·이정미·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146)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김성원·김순례·민경욱·박덕흠·박순자·송희경·원유철·이우현·이현재·정갑윤·조원진·지상욱 의원 발의)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장정숙·신용현·김병기·이동섭·정인화·이태규·김삼화·최도자 의원 발의)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김종대·이정미·윤소하·김종훈·심상정·이종걸·윤종오·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9)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이태규·조배숙·안철수·김경진·김동철·박선숙·이용주·박준영·최경환(국)·김종훈·추혜선·윤소하·양승조·서영교·김삼화·오세정·신용현·권은희·주승용·이동섭·박주선·장병완·김성식·김수민·손금주·송기석·김중로·윤영일·김관영·최도자·김종회·장정숙·정동영·박지원·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5006)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정재호·소병훈·진선미·손혜원·표창원·김정우·박찬대·김영진·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1)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광온·이개호·전재수·이학영·박홍근·설훈·안민석·박경미·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7)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찬대·이철희·문미옥·강창일·위성곤·안민석·김병기·송옥주·최인호·박광온·최운열·유동수·권미혁·박남춘·김영호·조승래·이춘석·김상희·유은혜·신창현·표창원·전현희·이재정·설훈·윤후덕·안호영·김현권·김철민·제윤경·고용진·김병욱·강병원·박경미·김종민·우원식·전해

- 철 · 정재호 · 소병훈 · 백혜련 · 김영진 · 김병관 · 박완주 · 임종성 · 기동민 · 홍영표 · 김현미 의원 발의)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 · 권성동 · 정양석 · 정운천 · 오신환 · 이군현 · 이학재 · 김성태 · 하태경 · 김현아 · 홍철호 · 김세연 · 박인숙 · 이진복 · 강길부 · 홍일표 · 여상규 · 김재경 · 이종구 · 김학용 · 정병국 · 장제원 · 박성중 · 김무성 · 김영우 · 홍문표 · 주호영 · 김용태 · 유승민 · 유의동 · 이해훈 · 이은재 의원 발의)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김삼화 · 전해숙 · 박주민 · 진선미 · 정춘숙 · 서영교 · 신용현 · 한정애 · 이정미 · 권미혁 의원 발의)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광상도 · 권석창 · 김도읍 · 김명연 · 김정재 · 김현아 · 윤상현 · 이양수 · 조훈현 의원 발의)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오신환 · 장제원 · 박인숙 · 정운천 · 김성태 · 이진복 · 하태경 · 강길부 · 주호영 · 정성호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595)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원혜영 · 유승희 · 이용득 · 김두관 · 박주민 · 제윤경 · 강병원 · 유동수 · 설훈 · 김철민 · 최운열 · 김병기 · 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2)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권미혁 · 설훈 · 김영호 · 김상희 · 김두관 · 제윤경 · 이용득 · 강병원 · 김병기 · 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4)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김경진 · 김종훈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중대 · 안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1)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김중로 · 전해숙 · 김정우 · 이동섭 · 김경진 · 홍영표 · 조배숙 · 이용호 · 천정배 의원 발의)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서영교 · 백재현 · 김경진 · 박용진 · 김종민 · 박홍근 · 박정 · 김철민 · 박남춘 · 금태섭 · 유동수 · 김수민 · 표창원 · 손혜원 · 김성수 · 유승희 · 김영춘 · 조정식 · 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2)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완수 · 김기선 · 광대훈 · 정유섭 · 김성원 · 전희경 · 염동열 · 권석창 · 이명수 의원 발의)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김영진 · 진선미 · 김정우 · 소병훈 · 박남춘 · 백재현 · 표창원 · 김영호 · 금태섭 · 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0)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 · 김성수 · 이용득 · 서영교 · 김종훈 · 유은혜 · 박홍근 · 고용진 · 김수민 · 한정애 · 박남춘 의원 발의)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홍문표 · 주호영 · 김무성 · 이종구 · 유승민 · 하태경 · 정운천 · 정병국 · 홍철호 · 황영철 · 정양석 · 여상규 · 김성태 · 김재경 · 이학재 · 오신환 · 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9)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 · 박지원 · 주승용 · 김경진 · 이태규 · 김종회 · 김삼화 · 오세정 · 천정배 · 김관영 · 박선숙 · 최도자 · 윤영일 · 박준영 의원 발의)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표창원 · 노웅래 · 김영호 · 박정 · 김상희 · 원혜영 · 위성곤 · 이철희 · 이원욱 · 심기준 · 박주민 의원 발의)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 · 이철희 · 조승래 · 김영호 · 권미혁 · 전해숙 · 유동수 · 강창일 · 우원식 · 전재수 · 어기구 · 강훈식 · 문미옥 · 강병원 · 제윤경 · 박경미 · 이용득 · 백재현 · 박찬대 · 설훈 · 유은혜 · 안호영 · 김철민 · 송영길 · 김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9)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 · 전재수 · 박남춘 · 신창현 · 송옥주 · 노웅래 · 박홍근 · 안민석 · 소병훈 · 조승래 · 설훈 · 이용득 · 이해찬 의원 발의)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김병욱·김영호·권미혁·전혜숙·박영선·윤관석·김태년·고용진·김상희·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0)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노웅래·조승래·인재근·정성호·위성곤·윤관석·윤종오·박홍근·송기현·신창현·박정 의원 발의)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동영·장정숙·김경진·정인화·황주홍·노웅래·김관영·이용호·윤영일 의원 발의)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철민·김한정·문미옥·박정·백혜련·설훈·소병훈·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이원욱·전현희·조승래·최운열·최인호·표창원·송기현·진영·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5)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노웅래·김경협·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철민·김한정·문미옥·박정·백혜련·설훈·소병훈·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이원욱·전현희·조승래·송기현·진영·최운열·최인호·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8)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조배숙·오세정·김삼화·권은희·주승용·최명길·최도자·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2)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종훈·정동영·문진국·김종대·이정미·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용호·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3)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관석·안민석·유은혜·전혜숙·김민기·이찬열·윤호중·정춘숙·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5)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서영교·채이배·김세연·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1)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박경미·김경협·이춘석·표창원·박용진·신창현·최명길·강훈식·노웅래·금대섭 의원 발의)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정우·김병욱·채이배·박범계·장정숙·안호영·박용진·박남춘·소병훈·민병두·송옥주·노웅래·권미혁·박정 의원 발의)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조승래·김정우·김종민·박정·소병훈·박남춘·이철희·유동수·윤관석·송옥주·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478)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재원·엄용수·김영춘·김성찬·윤후덕·장정숙·박정·홍철호·이양수·이동섭·박준영·윤소하·황영철·김철민·김용태·오제세·윤영일·신상진·백재현·조배숙·이원욱·유성엽 의원 발의)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박범계·전혜숙·홍익표·백혜련·서영교·이종걸·인재근·이원욱·박찬대 의원 발의)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김병관·이동섭·고용진·김경진·이용호·노웅래·김영주·최운열·장병완·김관영·김성수 의원 발의)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5)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홍철호·유의동·정운천·이종구·지상욱·정양석·유승민·박명재·김세연 의원 발의)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 대표발의)(이명수·이양수·박덕흠·전희경·이현승·여상규·홍철호·경대수·유승희·강병원·박용진·원혜영·이철희·박재호·이태규·정인화·송옥주·윤소하 의원 발의)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유은혜·기동민·김상희·이인영·박홍근·김영진·오영훈·설훈·정재호·소병훈·강창일·박정 의원 발의)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유승희·민병두·송기현·어기구·신창현·노응래·정재호·박남춘·전현희·고용진·김영호·김경협·박찬대·강창일·송옥주·김상희·백혜련·위성곤·이재정·소병훈·김철민·김병욱·조승래·김민기·박완주·오제세·안민석·이수혁·박광온·심기준·유동수·전해철 의원 발의)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철희·윤소하·박주민·원혜영·송옥주·신창현·김철민·소병훈·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8)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신창현·정성호·고용진·김정우·유동수·심기준·최명길·민병두·김관영 의원 발의)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해영·손혜원·박경미·박정·조승래·김병욱·박남춘·안규백·박주민 의원 발의)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이은권·윤영석·추경호·박완수·김진태·윤한홍·김석기·주광덕·정갑윤 의원 발의)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이종배·이철규·염동열·김석기·이은재·권석창·이양수·이현승·강석진·김도읍·민경욱 의원 발의)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유동수·곽대훈·최연혜·이채익·김병관·김성원·정태욱·권석창·함진규·김종석 의원 발의)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변재일·설훈·위성곤·윤소하·정춘숙·조승래·최명길·홍익표 의원 발의)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도읍·곽대훈·이채익·염동열·김정재·박명재·정갑윤·박덕흠·성일중 의원 발의)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채이배·박주민·김경진·노회찬·김종대·김종민·이정미·윤소하·김영호·권미혁·표창원·한정애·심상정·이철희 의원 발의)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현·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3)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윤후덕·윤한홍·김명연·박명재·이양수·박덕흠·유민봉·조훈현·윤영일 의원 발의)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김민기·조승래·서형수·박재호·전재수·윤호중·박광온·박홍근·윤소하·이찬열·최인호·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5)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김종대·심기준·이정미·김종민·심상정·윤소하·박주민·김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13)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병욱·신경민·권미혁·소병훈·박정·윤소하·정재호·김현권·양승조 의원 발의)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정갑윤·황주홍·장정숙·이찬열·최경환(국)·김경진·김광수·김중희·이동섭·장병완 의원 발의)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강길부·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용태·박인숙·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종구·이학재·이혜훈·

정양석 · 정운천 · 주호영 · 지상욱 · 하태경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

9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김경진 · 김광수 · 김병관 · 김삼화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오제세 · 유성엽 · 이동섭 · 이상돈 · 이용호 · 이종걸 · 이찬열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주승용 · 채이배 · 최경환(국) · 황주홍 의원 발의)

9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권미혁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정동영 · 손혜원 · 양승조 · 황주홍 · 박남춘 의원 발의)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주선 · 박광온 · 박경미 · 설훈 · 이학영 · 윤후덕 · 서영교 · 박남춘 · 김철민 · 이해찬 · 이철희 의원 발의)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현승 · 박맹우 · 박덕흠 · 김성태 · 홍문표 · 김광림 · 이우현 · 김기선 · 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

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성원 · 김정재 · 최연혜 · 이채익 · 권석창 · 김명연 · 정태욱 · 배덕광 · 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

1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김병관 · 어기구 · 김해영 · 제윤경 · 이재정 · 송옥주 · 이언주 · 오제세 · 이해찬 · 이철희 · 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2)

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윤후덕 · 이원욱 · 황희 · 정재호 · 박광온 · 김병관 · 추미애 · 권칠승 · 김철민 · 서영교 · 박남춘 의원 발의)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이훈 · 송기석 · 윤후덕 · 이개호 · 송옥주 · 이춘석 · 김철민 · 백재현 · 윤관석 의원 발의)

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해영 · 박광온 · 정재호 · 문미옥 · 이춘석 · 김정우 · 박경미 · 김성수 · 박정 의원 발의)

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박홍근 · 민병두 · 위성곤 · 황주홍 · 김정우 · 강창일 · 최명길 · 박

재호 · 유동수 · 전해철 · 김상희 · 유은혜 · 고용진 · 이학영 의원 발의)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 · 정성호 · 박정 · 신창현 · 황주홍 · 황희 · 서영교 · 박남춘 · 박주민 · 소병훈 · 전해철 의원 발의)

1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김삼화 · 김상희 · 전해숙 · 박주민 · 진선미 · 정춘숙 · 장정숙 · 서영교 · 신용현 · 한정애 · 이정미 · 권미혁 · 이재정 의원 발의)

1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김경진 · 김종훈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안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

1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김병관 · 이원욱 · 황희 · 박홍근 · 박재호 · 박광온 · 김해영 · 정재호 · 설훈 의원 발의)

1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 · 윤영일 · 홍문표 · 이동섭 · 김관영 · 조배숙 · 박준영 · 김종희 · 황주홍 · 유성엽 · 김중로 · 김영춘 · 김철민 의원 발의)

1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전재수 · 박홍근 · 인재근 · 강창일 · 서영교 · 소병훈 · 김정우 · 박찬대 · 강병원 · 윤관석 · 박주민 · 윤소하 · 유승희 · 이재정 의원 발의)

1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 · 김무성 · 이종구 · 황영철 · 주호영 · 이은재 · 하태경 · 지상욱 · 정양석 · 김영우 · 박인숙 · 김학용 의원 발의)

1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 · 유승희 · 박정 · 인재근 · 김철민 · 김상희 · 이재정 · 김정우 · 표창원 · 진선미 · 김영진 · 박남춘 · 김영호 의원 발의)

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임종성 · 김철민 · 유승희 · 김상희 · 민병두 · 이재정 · 이철희 · 원혜영 · 조승래 · 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1)

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임종성 · 김철민 · 유승

- 회 · 이원욱 · 김상희 · 민병두 · 이재정 · 이철희 · 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5)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박덕흠 · 이은재 · 이철우 · 김기선 · 염동열 · 이종배 · 이명수 · 권성동 · 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
1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강병원 · 김병기 · 김영주 · 김철민 · 박주민 · 박광온 · 박정 · 이원욱 · 유승희 · 최인호 의원 발의)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권미혁 · 이용득 · 신창현 · 김상희 · 박남춘 · 유승희 · 윤후덕 · 진선미 · 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6)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정재호 · 박주민 · 전해철 · 신창현 · 안민석 · 어기구 · 김두관 · 제윤경 ·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현 · 유승희 · 이용득 · 박정 · 강병원 · 김영호 · 최운열 · 김경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수혁 · 김병관 · 강훈식 의원 발의)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정재 · 김태흠 · 성일종 · 김명연 · 윤영석 · 이채익 · 광대훈 · 김기선 · 이현승 · 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광온 · 박경미 · 설훈 · 이학영 · 윤후덕 · 서영교 · 박남춘 · 김철민 · 이해찬 · 이철희 의원 발의)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홍익표 · 황희 · 박재호 · 윤관석 · 문미옥 · 김해영 · 김태년 · 제윤경 · 추미애 · 이원욱 · 김영진 의원 발의)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윤후덕 · 이원욱 · 황희 · 정재호 · 박광온 · 김병관 · 추미애 · 권칠승 · 김철민 · 서영교 · 박남춘 의원 발의)
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해영 · 박광온 · 정재호 · 문미옥 · 이춘석 · 김정우 · 김성수 · 박정 · 권미혁 의원 발의)
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김용태 · 김승희 · 임이자 · 김종석 · 김성태 · 이은권 · 유재중 · 김규환 · 유민봉 의원 발의)
1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민병두 · 최명길 · 위성곤 · 김정우 · 전해철 · 유동수 · 고용진 · 김상희 · 유은혜 · 강창일 · 황주홍 · 박재호 · 박홍근 · 이학영 의원 발의)
1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김삼화 · 전해숙 · 박주민 · 진선미 · 정춘숙 · 장정숙 · 서영교 · 신용현 · 한정애 · 이정미 · 권미혁 · 이재정 의원 발의)
1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 · 김경진 · 김종훈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안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
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선동 · 이현재 · 하태경 · 김성원 · 김성찬 · 함진규 · 이종배 · 조경태 · 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
1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조승래 · 백혜련 · 김병욱 · 소병훈 · 신창현 · 박영선 · 어기구 · 강병원 · 최운열 · 안호영 의원 발의)
1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임종성 · 김철민 · 유승희 · 김상희 · 민병두 · 이재정 · 이철희 · 원혜영 · 조승래 · 위성곤 의원 발의)
1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심상정 · 이원욱 · 김세연 · 김현아 · 윤종오 · 조배숙 의원 발의)
1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선동 · 함진규 · 이종배 · 김성찬 · 정갑윤 · 하태경 · 박명재 · 김석기 · 경대수 · 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
1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 · 이해찬 · 노웅래 · 박찬대 · 신창현 · 송옥주 · 제윤경 · 권미혁 · 유동수 · 김종민 의원 발의)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유동수 · 어기구 · 신창현 · 제윤경 · 유은혜 · 고용진 · 이용득 · 김철민 · 권미혁 · 민홍철 · 박정 · 기동민 의

원 발의)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권미혁 · 이용득 · 신창현 · 김상희 · 박남춘 · 유승희 · 윤후덕 · 진선미 · 이재정 의원 발의)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정재호 · 박주민 · 전해철 · 신창현 · 안민석 · 어기구 · 김두관 · 제윤경 ·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현 · 유승희 · 이용득 · 박정 · 강병원 · 김영호 · 최운열 · 김경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수혁 · 김병관 · 강훈식 의원 발의)

**1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김규환 · 권석창 · 안상수 · 김용태 · 김무성 · 김종석 · 전희경 · 경대수 · 유의동 의원 발의)

**1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김병관 · 채이배 · 어기구 · 김해영 · 제윤경 · 이재정 · 송옥주 · 이연주 · 오제세 · 이해찬 · 이철희 · 전해숙 · 양승조 의원 발의)

**1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강석호 · 이명수 · 정운천 · 홍문표 · 김성태 · 김현아 · 장제원 · 박성중 · 김학용 의원 발의)

**14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의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

**14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의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45.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의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46.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의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6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는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의 이득률이 1.55에서 0.27까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각 정당에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구를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100석 혹은 몇십 석을 늘리는 방안들이 제기됐지만 지역구 수를 줄인다는 것이 국회 여론의 저항을 받고 또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이 국민 여론의 저항을 받아서 전혀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득률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거대정당 혹은 여당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선거법 개정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내년 개헌에서 해야 하는데 민의에 충실한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비로소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그동안 꾸준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해 왔고 내년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나 보수 야당들도 권력구조 분산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제가 되는 선거법 개정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법 개정안에서 두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첫 번째, 득표율에 따는 의석수 배분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

두 번째,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의 저항을 가능한 최소화하여 실제로 통과 가능하게 한다.

우선 첫 번째, 연동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병립형을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회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지역구 수를 유지하였습니다.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덴마크처럼 선거구 책정에서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책정하게 되니까 선거구 수를 줄이게 되면 지

방과 농촌의 대표성이 현저히 약화되게 됩니다. 또한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생활공동체나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지역구 수를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위적인 선거구 조정을 피하면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도 가능하고 또한 대도시의 경우 구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장점도 보입니다만 중·대선거구제의 치명적인 약점,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대선거구제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높이게 되면 선거구 주민 수에 따른 편차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의 증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등가성을 최대화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5.38 대 1을 1 대 1이나 1 대 2로 해야 하겠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 4 대 1로 해도 연동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과 많이 연구한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물론 이득률, 즉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와의 균형이 1 대 1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표의 등가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겠지만 지역구 수 현행 유지와 의원 정수 증가를 최소화해서 통과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득률의 차이를 현재 1.55 대 0.27을 1.31 대 0.80으로 현저하게 줄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택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게 되면 차차 의원 정수를 더 늘려서 이득률 차이를 더 좁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대표하지 않고 전국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경우에 그 특정 이해집단은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도의 지역 대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특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말하자면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순수 비례대표의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야 지역 이

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또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대다수의 힘없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비례대표는 특정의 힘 있는 이해집단을 대표하거나 혹은 당내의 패권적 계파 정치로 인해서 당 대표에 줄 서는 당 대표 친위대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져서 사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도 연동형이라는 의미가 뭔지 너무 어려워서 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호감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이름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 말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그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지역구는 전국구보다 더 우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초과했을 때 지역구 당선자를 인정하는 독일식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에 따랐습니다.

다만 독일식은 지역구 당선자 초과 수만큼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식을 택해서 비례성을 더욱 정교하게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국회 의석수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회 의원 수가 더 초과하는 결과, 변동하는 결과를 국민 여론이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당선자 수가 배정 의석수를 초과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에 다른 정당들은 그 나머지 의석수로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 의석수에는 변함이 없는 스코틀랜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 결과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때 그 꽃은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너무 많은 사표를 만들어 내는데 현재의 47석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으로 그 사표의 단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선진적인 선거구제라고 평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가장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부디 정개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고, 특히 제 선거법 개정안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112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仁和 의원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인 만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는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대표나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정당에서는 후보자 접수 시 전과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법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출직 당직자의 성품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12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의원 존경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 및 교육, 주거 등 청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정치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청년층의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청년의 당원 가입도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각 정당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정당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정치를 발전시키고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경상보조금 총액의 50% 상당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경상보조금 용도 제한 규정을 확대할 경우에 각 정당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상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청년정치의 발전,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본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43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인 1소위 소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0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청원 2건 등 총 94건의 주요 내용을 일괄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병훈 의원, 김상희 의원, 박주민 의원, 박주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4건의 개정안은 전국을 하나 또는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를 결정하고 결정된 정당별 총 의석수와 각 정당이 획득한 총 지역구 의석수 간의 차이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으로 보정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의 발생에 따라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일치 해소에 기여하고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정당정치 의 틀 내에서 반영하는 데 적합한 제도로 보이나 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대통령제인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방안과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각각 제안되고 있으므로 적정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도 지역대표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개별 정당이 차지하는 총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이 더 많아지는 초과 의석이 발생함에 따라 생기는 비례대표 의석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정해진 의원정수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재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두 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박주민 의원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열세 권역에서의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하나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2명 이상이 되어 해당 지역구가 과다 대표될 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등 10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관영 의원안 등 2건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소개 청원 등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 연령과 현행 교육체계와의 연계성 문제라든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액해서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통해서 지출된 선거비용을 사후에 다시 보전해 주는 것은 이중 지원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은 그 용도가 선거비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로 설정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축소하여 선거일 2일 전까지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전투표 실시 기간에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표되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

부개정법률안과 진선미 의원이 소개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언론기관이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 활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언론기관 등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등 8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진선미 의원 소개 청원 등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행 오후 6시인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 당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투·개표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투표 편의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사항은 이미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어 합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원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당·정치자금법과 지방선거 관련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인 2소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정당법 23건, 정치자금법 17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건, 청원 2건 등 총 52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선거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5월 첫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6월에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5월에 치르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투표일을 5월 초로 변경함으로써 농번기를 피하여 선거일,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투표일 변경은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역단위 정당 조직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원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사무소와 2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김태년 의원안, 전해철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구·시·군 등에 정당의 지역단위 조직으로서 지역당 또는 구·시·군당, 지구당을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단위 정당 조직의 민주적 운영, 고비용 해소 및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치구·시·군에 구·시·군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당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추천보조금 규모를 두 배로 증액하고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며 정당별 배분 방식을 지역구 여성 후보자 수의 비율 중심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신



보라 의원안과 이원욱 의원안은 각각 청년추천보조금과 시민정치교육보조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각각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증진과 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되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계층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국가의 재정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의 연간 기부·모금액의 한도는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의 2분의 1까지로 정하려는 것이고, 김세연 의원 외 1인이 소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이에 더하여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등도 선출직 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해야 할 후원회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관리적 측면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시·도지사 임명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조하는 한편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 및 해외 사례와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원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예, 말씀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김부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인데, 요약본 말고 두꺼운 원본 있습니다. 원본의 141쪽을 보면 중·대선거구 실시국가 현황이라고 나오는데요.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41쪽에 중·대선거구 실시 국가 현황이라고 나오고 출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 현황표에서 중선거구·대선거구로 분류된 국가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가 몇 명이나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지 여부가 다수제냐 비례대표제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벨기에, 덴마크 이런 데는 다 정당 득표에 따라서 그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지면 자기 정당이 리스트 업(list up) 한 명단대로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수제의 중선거구·대선거구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중앙선관위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제대로 분류해서 정개특위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사무총장님, 이해를 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알겠고요. 저희도 이 자료가 각종 학계에서 보고된 연구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했을 텐데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그것 관련해서 저도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중선거구·대선거구의 기준도 좀 불명료합니다, 어떤 인정된 기준이 있지 않고.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유신 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 때 2인 동반 당선제를 중선거구제로 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 그러면 2인 동반 선거구제 내지는 나뉘먹기제 이런 걸로 인식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좀 포괄적으로 2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5

인 이하는 중선거구제고 6인 이하는 대선선거구제 이런 기준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적이고 그런 기준을 다시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좀 짧지만 5분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

그러면 이쪽부터……

○**咸珍圭** 위원 순서대로 해요, 왔다 갔다.

○**위원장 원혜영** 순서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왼쪽에서 말씀하실 분 강석호 위원님, 또……

그건 행정실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 먼저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라 젠틀맨 퍼스트로 강석호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상희 위원님 하시고, 정춘숙 위원님도 하신다고 그러신 거지요?

○**강석호** 위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선거 관련해서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강석호** 위원 어떻습니까, 자치구의회와…… 그러니까 자치구가 일선에 보면 시·군의회가 있고 자치구의 구의회라는 게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구의회가 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하는 일의 양과 시·군의회가 하는 일의 양이 사실 많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계속 얘기가 자치구의회와 광역의회와의 이런 기능을 좀 통합해서 합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종류에서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의회를 폐지해서 광역의회로 통합하고 시·도의회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조금 증원을 해서 이 경우에는 현재 계산을 해 보니까 구의원 중에 1014명이 줄어드는 대신에 광역의원은 426명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지방의회가 결실 있고 탄탄하게, 실속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지난 2012년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하고 2014년도에 구청장 직선제와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이 한번 제시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선관위 쪽하고 좀 연구하는 방향이 있는지 하나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기초의원들 지역에 내려가면 ‘당신들은 왜 자꾸 소선거구제 하면서 우리만 샘플로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기호를 ‘가’ ‘나’ ‘다’ 이렇게 해서 ‘가’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당선이고 ‘나’ ‘다’를 받으면 이게 낙선이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역을 묶더라도 기초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편을 하면 안 되는 까닭이 있는지 그것 전문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우선 아까 첫 번에 말씀하신 자치구의 의회를 광역의회와 통합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좀 비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정착은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에 훼손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초의원선거에서 사실 중선거구제 체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너무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역의 토호세력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대표성에 훼손을 가져오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인해서 사실 사표가 많이 방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밀착형 선거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 두 가지를 선관위에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부분은 그 당시에 본보기로 한번 한 거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지속됐던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곤 장관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한 법 개정안 중에서 이른제 의원안과 김학용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른제 의원의 안을 보니까 교육감 선출의 방법을 교육감 직선제 하는 것,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것, 시·도지사가 교육감 러닝메이트로 해서 선출하는 것 이렇게 세 방안 중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안을 내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가 지금 헌법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교육감 선출 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해 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조례로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좀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예,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학용 의원안을 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제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하고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을 시·도지사

가 또 임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관님,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따라서 직선제 폐지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 현실이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 어울리지 않게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누리과정이나 국정교과서 상황 관련한 그런 갈등에서 보다시피 지금 중앙집권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노정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저는 직선제라고 보고 권력자가 임명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야지 지방의 교육자치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요약보고서를 발표하신 중에 2000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제시했고요. 따라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이 중앙집권적으로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고 특히 지방교육자치가 도입된 이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 것을 이제는 제대로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제는, 교육감 직선을 하더라도 정당 공천과 관련된, 말하자면 정치적인 정당 공천과 관련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정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우리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공천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직선제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김대년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정태옥 위원** 이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선거권이나 선거 교육이나 당원 가입 연령 이런 것을 하향하자는 여러 가지 법률안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국민투표뿐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교육자치·정당법 이런 데 전부 다 이것 낮추자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 박주민 위원께서는 교육감 투표를 16세까지 낮추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총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제까지 나와 있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선거 연령이 인하됐을 때는 지금 인하를 하자는 가장 중요한 논거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대부분 나라가 18세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낮추자고 하는 게 가장 큰 논거인데, 실제로 학제가 거기하고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는 가을학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18세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황이라는 그런 특수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학교가, 특히 교사들이 선거에 대해서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이 많습니다. 전교조 교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그냥 공공연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 연령이 인하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와 똑같은 이유인데, 일본이 2016년에 18세로 인하한 것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20세

에서 18세로 인하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본 문부과학성에서의 대응지침에 보면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례도 좀 참고해서 가지고, 선거 연령이라는 것이 단순히 OECD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와 연계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서 가지고 선관위에서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선거라는 것은 대전제가 보다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해서 그 의사가 올바르게 선거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OECD 국가에서도 대부분 18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 국가에서도 고등학생인 경우에 18세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 현실 또 교육 현장의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다만, 선거법에서도 현재 교사가 그런 어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18세로 연령 인하가 된다면 부수해서 그 부분에 또 많은 규제 조항을 뚫으로써 일정 부분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태옥 위원** 아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나 노골적이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거든요, 현재에도.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나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런 어떤 법조항이 만들어진다고 해 가지고 지켜지지도 않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 학교 현장이 다른 나라와 같이, 서구 선진국같이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을 잘 고려해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정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정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부총리님 바쁘신데 나와 주셨는데,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지금 현행 교육감선거가 정당 공천이 배제되면서 그리고 기호도 없이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하니까 유권자들이 굉장히 헷갈려 해요. 우리 유권자들은 교육감님 후보가 과연 어떤 정책을 펴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 왔는가에 대해서 사실상 정력으로 유추하는 것 외에는 상당히 힘든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제도는 얼마나 위선적이나 하면 상당 부분에서 정당이 개입해 있습니다, 지방선거하고 동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정당에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일치 또는 이런 모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선거를 직접 경험해 보신 부총리께서 현행 이 제도를 내년에 그대로 실시해도 좋냐, 선거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사안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정당 공천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자신도 선거에 대해서 좀 미숙한 면도 있고 제대로 다 지원이 안 되는 면도 있고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발달 과정과 관련해서 직선제까지 발전을 했는데, 이 직선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 중에 상당수는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방교육자치에 맞게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권한들이 이양된다면 지방교육자치가 한층 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뚜렷하게 안 해 주셨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는 그동안에 우리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직선제까지 발전되어 온 것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나

타난 여러 가지 사안들은 거기에 맞는 보완조치를 논의하셔서 정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한정 위원 나머지 하나는요, 지금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이야기하면서 교원들의 또 우리 선생님들의 일종의 그런, 학생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입을 막고 생각도 봉쇄하겠다는 식까지로 비치는 면도 있고요, 특정 교원단체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선거 연령 인하까지도 하향하는 데 대해서 반대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정치화가 가장 심했던 때는 저는 유신독재 시절과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편향된 것으로 보면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정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동안의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암기식 그리고 강의식이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구와 마찬가지로 토론·토의식으로 나가면서 여러 개방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정치의식도 발전시키고 사회의식도 발전시키고 민주의식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이념 편향적이고 오도된 방식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보다 더 중립적인 방식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제가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제가 위안부 피해 배상과 사과를 촉구하는 수요집회 1300회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참석을 했는데, 마침 저의 지역구인 남양주의 수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그 집회에 참관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또 역사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6학년 학생들이 교사 인솔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한정 위원 교육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떻게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교육 체험 그리고 또 역사교육, 당연히 해야 되는 정치교육은 정치화라고 배제를 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식의 정치화 논리가 지금 우리 교육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역사의식과 시민의식을 길러 주는 게 교육이 할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위원 사무총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법, 특히 선거법도 그렇고 공평해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게 뭐 어느 특정 정당이든, 여든 야든 다른 정당이든 유불리에 따라서 고무줄 잣대마냥 우리한테 표가 유리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반대해야 되고 이런 논리는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정당하신 말씀입니다.

○咸珍圭 위원 제가 서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권 또는 득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 왜 만듭니까? 고무줄 잣대마냥 유불리에 따라서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그게 가치가 있는 법입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개정안을 내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법을 제안하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 선거구제 그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잘못되어 있지요? 이번에 좀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기호도 말씀하셨는데 누구는 뭐……

옛날에는 더 웃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끝 번호 받아야 돼요, ‘ㅎ’성이예요. 그게 기호 부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당 의원이고 야당이고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지금은 가번 나번 다번,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아세요?

그것 왜 개정 안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것은 저희가 개정한다기보다 국회에서 전적으로……

○咸珍圭 위원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거위에서 당연히 그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상한 것만 자꾸 올리고 말이지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함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아니, 가번 나번 그게 맞다고 봅니다, 누구는 가번 받고 누구는 다번 받고?

그것 고치세요. 그런 것을 좀 올리시라고요. 그것 꼭 이번에 올리시기 바라라고요.

제가 현역이지만 원외위원장들, 지난번에도 제가 했지만, 여야 의원들, 현역 프레임에 갇혀서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왜 안 고치세요?

현역, 원외위원장들이 지역구 구·시·군별로 무슨 사무실을 둔다고 그러는데 그게 운영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도 개정 의견은 누차 낸 적이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래서 현역하고 원외하고 일정 조건 갖춘 그런 지구당의 경우에는 당협이 됐든 공평(fair)하게 만드세요.

저, 현역 프리미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정당당히 붙어서 이기면 하는 거고 지면 마는 거지 그것을 원외위원장들은 뭐 할 수 있는지……

현역 의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왜 못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라고. 그런 것부터 고치시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이 됩니까, 여든 야든?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저하고 몇 명만 법안 냈지. 19대 때 폐기처분 됐어요, 그 법안 냈더니.

저 그런 것 원치 않습니다. 현역이라고 프리미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것 고치시기 바라라고요. 원외위원장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동의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런 것 담장 위를 안 걷도록 페어하게 회계처리 제대로 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당초에 이것을 막아 놓은 이유가 뭐니까? 본인들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흑여나, 사람은 권한을 갖고 있으면 남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 장치를 둔 건데, 그것 얼마든지 나와서 활동하는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통일되고 나서 하세요, 통일 되고 나서.

후원회도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2분의 1, 선거비용 제한액 저도 법안은 냈지만, 일차적으로 19대 때 냈었어요. 그래서 관찰시켰는데 이것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하세요. 왜 2분의 1로 하는 거예요? 회계처리 투명하게 하고, 선관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모든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똑같이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지침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똑같이 해야지 왜 그것을 국회의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하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지난번에도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일단은 아마 선거……

○咸珍圭 위원 그게 논리적 근거가 뭐예요? 2분의 1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러니까 선거구민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도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咸珍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오면 팬클럽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들, 교육감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면 피곤합니까? 그것 논리적 근거가 안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러니까 후원금을 내는 국민들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저희는 개정 의견을 누차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

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정시켜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정 의견 안 낸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咸珍圭 위원 제도를 올려서 모든 공직후보 출마자들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시라는 말이에요. 국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왜 안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입법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번에 꼭 좀 그렇게 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의 맨 마지막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하는 거요 저도 100%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개특위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관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총리 나오셨으니까요, 앞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이기는 하지만 짧게 짧게 여쭙보겠습니다.

직선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들이 많은 게 실제로 저도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보면 교육감후보들이 사실 누가 무슨 당이 지지하는 후보냐 아니냐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시·도지사와의 사진을 찍어서 하기도 하고 같이 공동 이벤트를 하기도 하는 일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자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합니다만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성향이 같은, 후보자가 어느 정당과 가까운지를 보고서 찍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러닝메이트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동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러닝메이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진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져서요, 투표권을 가져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비교육적이거나 반교육적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선거권 연령과 관련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18세로 그분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18세가 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많이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 경우에 교육계에 무슨 큰 혼란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위기인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더 이하로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위원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도지사 선거에 준용해서 같은 규모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엄청난 규모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시·도 교육감후보자들이나 혹은 당선된 분들이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여러 안 좋은 재판을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 혹시 고민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실제로 교육감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선거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조금 미숙하고 그리고 선거조직이나 선거자금 그리고 실제 선거운동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한계들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후보 개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습니까만 저는 제도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합동유세가 폐지되고서 TV 토론을 통해서, 방송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적극 도입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게 그래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해야 되는데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엄청 화납니다. 제가 후보로 뛰었을 때도 화가 나고요,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 도.

자기가 앞서 나가는 1등이라고 안 나와 버려요, 그러면 검증할 수 있는 장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9대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4명이었는데, 그때부터 하셨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박용진 위원 그런데 20대에는 오히려 더 늘어요. 돈 400만 원 우습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래서 저희가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거 저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탈탈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징계는 못 내리니까 과태료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당선될 게 자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은 당선되고 나면 돌려받는 선거보전비용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지금 제안한 것은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저희하고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리고 불참 횟수에 따라서 곱하기 2회, 3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동의합니다.

○박용진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으로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촛불 이후에 한국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 갈 책무를 우리 정개특위가 갖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정치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은 바로 국회 개혁이다,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바로 그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원적인 정당 체제를 존중하는 그런 선거제도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개특위도 5개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원내 정당이 7개가 됐습니다.

다시는 한국 정치가 양당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당제나 다당제나 제도적인 우열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정치를 주도해 온 양당 체제는 이미 낡은 게 됐다, 그 양당 체제가 만들어 낸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라는 결과에 의해서 국민들로부터 부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상기해 보면 지난 대선 때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 정치구조에서 어떻게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만들어 낼 건가가 중요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국회도 여전히 양당 체제의 정치 관행과 제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정치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취지가 이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서서 시대 전환의 핵심 과제가 됐다는 점을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여당에서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비례해서 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선거제도 또 정당 지지도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우리 정치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지방선거

거든요. 지방선거제도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실정을 보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케 합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1당과 단체장 소속 정당이 일치하고 1당 비율이 90%가 넘는 단점정부 형태가 많습니다.

4회 선거에서는 16곳 중에서 10곳이 90%가 넘는 단점정부 형태를 보였습니다. 5회 지방선거에서는 16곳 중에 3곳—대구, 광주, 전북입니다. 6회,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17곳 중에서 5곳이 1당과 단체장 소속 정당과 일치하는 비율이 90%가 넘는 단점정부 형태를 보였거든요. 기초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분권 개헌이니 지방자치 시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그런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각별하게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원래 도입됐던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 3인에서 5인까지 뽑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광역의회는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00% 비례로 하든지 아니면 비례를 늘리고 대선선거구를 도입 하든지 이런 획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치분권 개헌 이전에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부터 이루어 내는 것을 정개특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해외사례 비교의 오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오류를 지적하는 거니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예.**

**○심상정 위원** 오류를 지적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1쪽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회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선거제도라서 대통령제인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비례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일일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원장 원혜영** 일일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전해 주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선관위원회도 그렇고 정개특위 전문위원실에서도 과거의 대통령중심제와 또 단순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했던 논리와 그 사례 분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문제 인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다 재검토 지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저는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요, 보다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한다든지 또는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교사의 정당 가입이라든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진국들과는 달리 아주 포괄적으로 공무원들, 특히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든지 정당 가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1년 6월에 한국 정부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있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박주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규제는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헌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데 실은 교사가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자유권을 비롯한 사회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는 폭넓게 인정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시민의 정치적인 활동의 권한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분들도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어떤 지적을 하셨다면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게 될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됨으로써 학업에 대해서 방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 혼란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일본의 경우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면서 거기에 걸맞게 학생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과는 반대되게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지침들을 내려보냄으로써 혼란이 발생했다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고교생이 휴일하고 방과 후에만, 그것도 학교 밖에서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었고 특히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일주일 전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세워서 선거 가능 연령은 낮췄는데 정작 그에 걸맞은 정치활동은 못 하게 하는 그런 모순된 지침을 내렸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그동안 발전해 왔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부분을 인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구 경우에는 13, 14세경부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당 가입도 시작되는데 우리도 단계적으로 그것을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니까 선거 가능 연령이 특히 낮춰졌을 때는 오히려 선거권 행사를 보다 바람

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정치활동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폭넓은 정치의식이나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게 올바른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위원 그렇다면 물론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게 될 경우에 교육부가 그런 부분에 관련된 후속조치를 취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보장이라는 방향성에 맞는 그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단계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비례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정춘숙 위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비례대표에 여성 추천 의무 50%를 의무화하고 강제화하도록 하거나 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이런 법안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국회에서는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라든지 다문화 비례 이런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것이 없어서 취약계층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추천을 강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54명이었던 비례대표가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를 분할하는 문제 때문에 47명으로 줄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개

특위에서 반드시 저는 지역구하고 비례의원 비율을 2 대 1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총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상 비례성이 우선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항에도 있듯이요.

그렇지만 지역대표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정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여성 비례를 특별히 얘기를 해 보면 여성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정당들이 의무 비율을 지키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입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여성 지역구 의원이 50%, 민주당 14%, 국민의당 11%, 바른정당 10%, 자유한국당 4%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수가 OECD 평균 여성 의원이 28%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매우 적은 것인데, 이 문제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후보자의 수준을 보면 더 문제인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충남·충북·제주는 여성 국회의원 지역 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10%도 안 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전체 여성 후보의 비율이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당도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지킨 정당이 없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후보 30% 의무화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의무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의 의견입니다.

한 가지 더는, 18세로 청소년 선거권을 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맞으신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가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정춘숙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선거운동 연령의 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도, 헌법에도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 설명 자료를 보면…… 공직선

거법 일부개정안 내용처럼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저의 의견은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가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지금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었고요. 아예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봅니다.

**○정춘숙 위원** 그런데 현재에서도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선거할 수 있는 연령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꼭 맞춰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부총리님께 한번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 직선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당사자인데 내가 왜 선거를 못 하느냐?’ 이런 제안을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선거 연령,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의 하향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교육감선거에서 16세로 낮추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의 직접 당사자들이 교육감을 뽑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 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이신지 부총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당사자주의와 관련해서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나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나 또는 권리의 의식 수준 이러한 것들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투표권을 주는 문제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정춘숙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법안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병훈·김상희·박주민 의원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박주현 의원안은 아까 제안설명도 있었는데 전국 단위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이 4개 법안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현행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서 사표 발생에 따른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취지인데 또한 모두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늘게 되는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윤관석 위원** 의석수 확대를 최소화하고 낮추기 위해서 첫째로는 농촌, 산·어촌 지역에는 소선거구를 유지하고 도시 지역에는 2인 선출의 중선거구로 확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두 번째는 선거구 획정에 인구수와 더불어 면적 기준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방안, 세 번째는 권역별 의석 할당을 농촌, 산·어촌에 가중할당하는 방안 등이 일부 여러 군데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중선위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비례성을 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또 지역대표성 또한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 의사가, 표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모든 대안에 넣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이 부분이 현재에서도 얘기했던 비례성 강화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다음에 19대 정발특위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16년 11월에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방안으로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관련 법안 이것들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토론해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최근의 문자 폭탄이나 또는 혼란을 걱정하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어떻게든 스마트폰, SNS 등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의사표시에 대한 요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선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물론입니다.

헌법에 자유선거의 원칙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헌법재판소 판례라든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민주선거에서 자유선거의 원칙은 당연히 천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의사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라든가 의사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 의견을 낸 바에 의하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것 또 과도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일반적인, 국민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부분들은 다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관석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는 1·2소위에 나누어서 공직선거법과 그다음에 정당법, 정치자금법들을 논의할 텐데 다 중요하고 필요한 법안들이겠습니까마는, 특히 내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제도, 선거구 개선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고, 이 논의는 시간적으로도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시급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빨리 논의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

명을 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지난번 20대 국회의원선거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후보자가 출마를 하게 되고 또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선거구 획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정개특위에서 신속히 논의되어서…… 일단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예비후보도 나올 것이고 선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관석 위원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이나 개정 관련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선관위에서도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 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과 윤관석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대비의 시급성을 얘기하셨고 또 현황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마련한 자료를 함께 참고하셨으면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편중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제4회 지방선거의 광역, 특히 광역이 심한데요. 광역을 보면 서울시는 한나라당이 100% 장악을 합니다. 경기도도 100%, 대구시도 100%. 반해서 광주시는 열린우리당이 또 100% 장악을 합니다.

최근의 2014년도 제6회 지방선거를 보면 지역구 당선만 갖고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현재의 민주당이 서울시를 75%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법도 아무 효과가 없고, 대구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100% 또 광주시는 민주당이 100%.

이게 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든가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 이것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이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당이 절대 다수인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4회 지방선거에서 230곳 중에 123곳으로 과반이 넘고 최근 6회 지방선거에서도 101곳으로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시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의 검토의견이나 또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야 될 지방의회에 일당 독점 현황이 있는 이런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지금 의석수의 100분의 10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단순하게 해 봅니다.

**○위원장 원혜영** 감사합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심상정 위원** 질의가 아니라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질의든 질문이든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함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咸珍圭 위원** 심 대표님, 안 하세요?

**○심상정 위원** 위원장께서 먼저 질의……

**○咸珍圭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원혜영** 아, 그러세요?

그러면 레이디 퍼스트로 심상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레이디 퍼스트를 법에도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웃음소리)

농담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법하고 세종시특별법 중에서 선거 관련된 조항만 개정안을 낼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 정개특위에서 다루게 됩니까? 그것 어떻게……

**○위원장 원혜영** 저도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행안위로 갈 텐데 우리 정개특위에서, 그것 선거제도에 관한 것이니까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실무 제도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보고 한번 검토하는 사람한테 하세요.

**○심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혜영**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지금 광역·기초 마찬가지로, 특히 광역이 심합니다. 제가 경기도 대표의원 할 때 100% 다 당선돼서 했는데 그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저희 당이 100% 다 됐지만.

그래서 아까 사무총장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비례대표제를 그러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을 하든 30을 하든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咸珍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견제와 균형인데 그것 자기들끼리…… 저도 물론 그때 대표를 했어요. 100% 다 됐을 때 했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교육감님 하셨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咸珍圭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때 서로가 굉장히 많이 시달리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咸珍圭 위원** 광역단체장하고 피로하게 싸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것 교육제도 고쳐야 됩니다.

말로만 헌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자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교육감 끝나고 지금 부총리하고 계신데 현직 교육감으로 계실 때 정말 헌법상 보장돼 있는 중립·자치 이게 완벽하게 실현됐다고 봅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러나 교육감이더라도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동의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咸珍圭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말씀만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교육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치나 중립을 얘기하려면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제도든 부작용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또 만일 교육감에 우리 출신이 들어선다면 말로는 정당 공천 안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정당 공천 아닌 겁니까? 누가 봐도 교육감이……

학부모들이 절규하고 있어요. 정치판도 혼란스러운데 교육까지도 그런 식으로 가고, 누구 하면 그게 어느 당 출신인지 다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가고.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정전입금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주고 있지만, 비법정전입금 받아 보셨어요?

비법정전입금 받아 보셨어요?

못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사안에 따라서는 주기도 했는데……

○**咸珍圭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 법정전입금은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만 비법정전입금의 경우는 광역단체장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런 악연 때문에 서로 지원하지도 않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고치고 기본시설 보수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왕 나오셨는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렇지 않습니다.

○**咸珍圭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 교육감이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초자치단체에 파견되는 교육장의 경우에는……

○**咸珍圭 위원** 일반 지방자치에서 광역단체장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론 선출직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지사 이상의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 교육장은 임명직이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터치를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광역정부에 의원들이 있지만 그 의원들이 지방교육청에 무슨 권한이 있어야지, 권한도 없지만 또 어떤 감사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면 권한도 없고 또 견제도 못 해요.

교육감 하셨고 지금 부총리 하고 계신데, 지방 교육장한테 대담하게 지방 교육감의 권한이나 예산을 넘겨주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방자치는 국회에서 이원적인 자치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지방 교육자치는 그냥 일원적인 자치로 했고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 파견돼 있는 또는 임명돼 있는 교육장의 경우는 그쪽의 의회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咸珍圭 위원** 저는 그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큼니다, 크고. 지방 교육장은 법률상으로 얘기하면 사자에 불과해요.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咸珍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말씀드린 후원회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지금 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咸珍圭 위원** 똑같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예비후보자를, 예비후보자 후원회가 없기 때문에……

○**咸珍圭 위원** 똑같아요, 국회의원들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후보자 후원회는 둘 수가 있는데요……

○**咸珍圭 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교육의 자치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그냥 일선 교육, 교장 퇴직하고 이러신 분들이 여기 뛰어듭니다, 뛰어들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줄잡아서 한 40억·50억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어드셨다가 꽤가망신당하고 법정에 서고, 비밀비재합니다. 이것 제도 이제 고쳐 주셔야지……

그분들이 뭘 압니까? 순수한 어떤 교육적 사명

감 때문에 출마를 하시는데 사각지대로 그냥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咸珍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6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해당 안건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향후 우리 특위에 회부되는 안건 또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법 제5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 중에 정춘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본 후 4당 간사님들과 일정을 협의한 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2일과 25일에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장관님과 김대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석호	김상희	김재원	김한정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박찬우	심상정	원혜영	유성엽
윤관석	이용주	정양석	정춘숙
정태욱	함진규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김병관 박주현 정인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전문위원 천우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장관 김상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김대년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7. 8. 31. 하태경·주호영·이혜훈·이학재·이종구·김세연·정병국·유승민·박인숙·지상욱 의원 발의)

9월 1일 회부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임종성·조승래·이춘석·남인순·강훈식·정춘숙·기동민·이인영·안규백·이찬열·윤관석·문희상·김정우·김해영·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박남춘·이재정·김두관·진선미·이훈·김현권·유은혜·윤종오·김정우·전해철·서영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4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9. 4. 김성원·경대수·김도읍·김정재·김한표·박덕흠·박명재·박완수·엄용수·이은권·조훈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4. 소병훈·강창일·김영진·김철민·박남춘·박주민·설훈·인재근·정성호·추미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2017. 9. 4. 홍문종·지상욱·조훈현·이양수·권석창·임이자·이채익·김한표·김성원·함진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5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9. 5. 이인영·인재근·소병훈·강훈식·  
기동민·유은혜·서영교·권미혁·임종성·  
설훈 의원 발의)

9월 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17. 9. 8. 박병석·조승래·김영호·표창원·  
소병훈·손금주·이철희·금태섭·정성호·  
신창현 의원 발의)

9월 11일 회부됨

○의안 철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16. 홍문종·이양수·윤상현·김한표·  
조훈현·임이자·지상욱·이채익·문진국·  
김현아 의원 발의)

2017년 9월 4일 발의자 철회 요구